



# 환경입법확충의시급성

## -제18회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구연창 / 경희대학교 법대교수

그동안 세계도처에서 환경론자들이 그토록 목소리 높혀 주장해 왔었고, 선진제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그 나름대로 환경문제의 저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서서히 문제로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당연하였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임을 이제는 어렵잖이나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제는 환경문제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접, 간접으로 범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점은 경험을 통하여 주지의 사실로 되었다. 대기나 수질오염의 물질이 국경을 존중하지 않으며, 오염물질의 원인을 야기하는 나라는 물론 그렇지 아니한 나라에까지 그 오염물질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해양오염, 대기오염, 원자력발전소사고로부터의 방사능물질의 이동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산성비나 오존층파괴의 가공스러운 범지구적인 문제는 환경문제의 세계적 성격을 너무나 잘설명해주고 있다. 몇몇 국가들의 국내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만으로써 이러한 범지구적 성격의 환경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범지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세계각국이 자기 영역내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국내적 노력은 재을리하면서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만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문제, 나아가서는 세계의 환경문제의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가. 과거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가치를 편중시킨 경제성장우선주의적인 환경정책 하에서 현저한 환경문제를 우리가 참고 견뎌야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5000불에 육박하게 되면 경제성장우선주의는 물론 경제성장지향적 조화주의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과거 개도국을 거친 선진제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바야흐로 이러한 단계 내지 시점에 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성장지향적인 조화주의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립, 추진해왔던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지향적 조화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확충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에서의 지표가 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종합화, 적극화, 일원화, 과학화, 계획화, 효율화, 민주화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지향적인 조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급한 환경정책 내지 행정의 실천방향이 몇가지 있다. 그것은 첫째, 환경입법의 정비, 확충이다. 둘째, 정책의 전환과 함께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그 정책을 담당, 수행할 행정기구의 확충이다. 셋째, 환경정책의 전환에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환경행정기능의 정부내에 있어서의 재개편이다. 넷째, 환경규제의 강화이

다. 다섯째, 위와 같은 정부차원의 정책전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민간차원의 자세전환의 필요성이다.

1990년은 환경정책이나 환경행정의 측면에서 볼 때 진실로 의미깊은 해이다. 환경정책의 적극화, 종합화, 일원화, 과학화, 효율화, 적정화, 민주화라는 발전지표를 향한 또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는 켜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청의 환경처로서의 격상과 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였다든 접이다. 이러한 조치는 누구 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주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정책의 수행을 위하여는 그 근거가 되는 환경입법의 제정. 정비가 불가결하다. 지금까지 환경보전법을 근간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으로써 환경문제에 대처해 왔으나, 환경정책의 전환과 함께 환경입법은 체제상으로도 내용상으로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아니될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정부는 환경처의 출범과 때를 맞추어 지난 가을 정기국회에 환경보전법을 분법화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의 6개법안이 제안되었지만 그만 해를 넘겨 지난 2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말았었다. 지난 3월16일 임시국회가 폐회하였지만 환경6법은 손도 대지 않은채였다. 임시국회가 너무나 한 일이 적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당의 합당여파로 줄다리기가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만 것이 여간 한심하지가 않았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민의 여론과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작년 정기국회에 제안되어 계류중에 있는 환경6법은 현행환경보전법을 분법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환경분쟁조정법을 제외하고는 현행법과 크게 다름이 없이 이를 개별법으로 분화하고 다소간 확충한 것이다. 이들이 어찌 지자제법, 국가보안법, 광주피해보상법등의 정치입법안과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어쨌든 국정감사때 서술이 퍼렇게 보여주었던 국회의원들의 환경보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보전 내지 환경규제는 곧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입법이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환경입법의 제정을 게을리하는 것을 볼 때 과연 국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해 주고 있다. 불행한 어떤 대형환경사고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TV에 실황중계나 하면 좀 신경쓰고 활발히 움직일런지 모르겠다.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나면 곧이어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될 각종의 환경입법이 또 기다리고 있다. 예컨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오염방지사업비부담법, 환경피해조사법, 환경과학기술개발촉진법, 지하수오염방지법, 항공기소음방지법 등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환경보전의지의 실천을 한걸음 전진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인 것이다. 들리기에야 야당측의 환경6법의 내용보강주장으로 입법추진이 늦어졌다고 한다. 환경입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가상하다. 그러나 일본의 그 유명했던 1970년도의 이른바 공해국회에서도 야당은 보다 강력한 환경입법의 제정을 강변했지만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았었다. 환경입법은 그 내용을 강화만 한다고 하여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잘 알아야 할 일이다. 환경정책이나 환경입법은 하루 아침에 성급하게 강화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입법을 강화할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정된 환경입법의 실효성있는 시행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혹 약간 부족한 법이더라도 그 실효성있는 시행에 국회가 관심을 둔다면 현재의 환경6법안보다 훨씬 강력한 입법을 한 것보다 더욱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여당측이나 정부는 입법원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량조항으로 입법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여유를 보였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로 하여금 환경보전지향적 조화주의의 환경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간에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환경입법을 통과시키지 아니한 국회의 자세 내지 게으름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판례법국가로서의 전통을 가진 미국에 있어 매년같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제정 내지 개정하여 정책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 쓰고 외유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배워와야 할 것이다.

어떻든 국회의 환경보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보전 내지 환경규제는 곧 국민의 건강 및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입법이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환경입법의 제정을 게을리하는 것은 과연 국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제1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는 6월의 임시국회를 우리 국민은 눈여겨 지켜보고 있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